

캘리포니아에서의 식사 및 휴식 시간

(IWC Wage Order 섹션 11에 의거)



YOUR LIFE
YOUR CARE
YOUR PEOPLE

이 내용의 적용 대상

이 정보는 PPL을 재무 관리 서비스(FMS) 제공업체로 지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캘리포니아 자기 결정 프로그램(SDP) 참여자에게 적용됩니다.

식사 시간 규정

- 근로자가 하루에 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→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하고 식사 시간을 생략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, 모든 근로자에게 30분의 무급 식사 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
- 식사 시간은 근로자들이 5시간 근무를 마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근로자가 오전 8시에 출근한다면, 식사 시간은 늦어도 오후 12시 59분까지는 시작되어야 합니다.
- 근로자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→하루 12시간 이하로 근무하고, 두 번째 식사 시간을 건너뛰는 데 서면으로 동의했으며, 첫 번째 식사 시간을 건너뛰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, 두 번째 30분 무급 식사 시간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.

근무 중 식사 시간(특별한 경우)

때로는 간병이나 다른 업무 때문에 30분간의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일을 멈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:

- 근무 중에 식사 시간은 가질 수 있습니다(근로자는 근무를 계속함).
- 식사 시간은 유급이어야 합니다.
- 귀하와 근로자 모두 서면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.
- 근로자는 서면으로 언제든지 해당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휴식 시간 규정

- 근로자가 하루에 3.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→근로자는 4시간 이상 또는 4시간의 절반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마다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.
- 휴식 시간은 4시간 근무 시간의 중간 또는 중간쯤에 제공되어야 합니다.

무제공 결과

- 근로자에게 필요한 식사 휴식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거나 일부만 주어진 경우, 해당 근로자에게는 정규 임금 기준으로 1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- 근로자가 하루 동안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공받은 경우, 해당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 기준으로 1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.

중요 고지

- 고용주로서 귀하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갖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.
 - 근로자들이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.
 - 근무 중 식사 시간에 관한 모든 서면 합의서를 기록으로 보관하십시오.
- **면책 조항:**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요약 정보입니다. 참여자는 **캘리포니아 Wage Order 섹션 11**을 참조하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자세한 지침을 얻어야 합니다. 링크: <https://www.dir.ca.gov/IWC/IWCArticle15.pdf>